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74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김미애 · 강승규 · 이종배
최수진 · 최형두 · 김예지
김민전 · 김기현 · 성일중
유용원 · 강선영 · 배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 · 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함(안 제3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출판물 판매 제한 위반의 죄 또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보고 위반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각각 그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49조의2 신설).

마.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49조의3 신설 등).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출판기념회 제한

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판매의 제한)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판기념회에서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출판물이 2권 이상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1세트를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판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대금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재

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그 약속으로 판매 대금을 대신하여 출판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33조의3(출판물 판매대금 결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판기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판물의 정가, 판매수량 등 판매내역
3. 출판물 구매자 현황 및 구매방식(현금, 신용카드 등)
4. 출판기념회 개최 비용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보고의 세부사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출판기념회 관련 범죄의 고발 및 수사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가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판매)를 위반하여 출판물을 판매한 자

제4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를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45조제2항제7호의 죄 또는 제46조제4호의 2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각각 그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9조의3(몰수 및 추징)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출판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사.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u> <u>·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u> <u>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u> <u>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u> <u>이라 한다)가 자신의 출판</u> <u>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u> <u>및 출판물 판매수입</u>
2. ~ 8.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 ~ 8. (현행과 같음) <u>제6장의2 출판기념회 제한</u> <u>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u> <u>물 판매의 제한) ① 출판기념</u> <u>회를 개최하는 국회의원등은</u> <u>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u> <u>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u> <u>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이 경우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u> <u>인 가격의 기준은 중앙선거관</u> <u>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신 설>

<신 설>

② 출판기념회에서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출판물이 2권 이상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1세트를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판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대금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그 약속으로 판매 대금을 대신하여 출판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33조의3(출판물 판매대금 결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

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역에

<신 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출판기념회 개최 일시 및 장
소

2. 출판물의 정가, 판매수량 등
판매내역

3. 출판물 구매자 현황 및 구매
방식(현금, 신용카드 등)

4. 출판기념회 개최 비용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
역 보고의 세부사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출판기념회 관련 범죄
의 고발 및 수사 등)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서의 출판물 판매가 법령을 위
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
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u><신설></u>	(현행과 같음)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판매)를 위반하여 출판물을 판매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를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u>제49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45조</u>
--	---

<u><신 설></u>	<u>제2항제7호의 죄 또는 제46조 제4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각각 그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제49조의3(몰수 및 추징)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출판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	--